第306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1 號(附錄)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2年2月27日(月)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제안설명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소속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수정의결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안의 취지에 따라 단년도 예산편성 및 장기계속 공사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은 계속비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인 계속비 편성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계속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증감내역과 증감사유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범위를 확대하였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비 지출연한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33호) 제39조제4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법률의 취지가 계속비 편성 확대에 있음을 감안하여 계속비 편성의 예외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 법률에서 열거한 기준에 따라 세부사항을 명확하에 규정함으로써 계속비 편성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소속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용섭 의원과 이혜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체토론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속비는 집행에 수년이 걸리는 등 단년도 예산의 집행과정과 다른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둘째, 현행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헌법 제55조제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2013년 6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성남·이종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체토론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슴드리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시 국회 사전의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 대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국회에 반드시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국회심의의 사각지대인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사용에 대해서도 국회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된 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광림·서병수·이용섭·이성남·강봉균·이종걸·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체토론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임명 시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총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둘째, 현재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임시조치법적 성격을 지닌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화폐발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에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주요 인물이나 사건, 문화재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기념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극적인 기념화폐 발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글로벌 개방경제하의 외화보유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외화표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 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의 방만한 편성 및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통제기능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된 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의원,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50%까지 경감하고,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퇴직 소방공무원의 동우회를 결성하여 퇴직 소방공무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퇴직 소방공무원의 풍부한 소방현장 경험과 지식을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전수하고 나아가 사회봉사활동에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헌신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높임과 동시에 국민의 소방안전과 사회의 공익에 공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오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사 서비스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로 이루어져 설립 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어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화 된 바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규제 없이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도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의뢰를 하면서 제공한 정보로 인해 역으로 사생활침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한 자격제도 운영, 영업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민간경비 분야의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관리되면서 개인과공공의 안전확보와 관련하여 국가기능과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선례를 비추어 볼 때 민간에 의한 사실조사 분야도 영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입법이 필요합니다.

민간조사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영위되는 사적 활동들로서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유니폼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경비 서비스와 사복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조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개정입법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김소남 의원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속영업에 속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에서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숙박업과 이용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속영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적으로도 대통령령에서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현행과 같이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숙박업 및 이용업에 대하여는 그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 기본권을 제안하는 행위로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2항과 같이 지문채취와 관련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행 인감증명법에는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4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있어 이러한 근거규정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토대로 대리인에게 지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바, 본 법률안의 취지를 각별한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하오며,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십니까?

수원 영통 출신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의 설립과

육성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아니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는 바, 환경·건축·교통·녹지 등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 법에 특례를 규정하여 현행의 개별적이고도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을 위한 지방연구원 설립 문제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40배까지 차이가 나서 지역 간 형평성과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부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조례를 제때 제정·개정하지 않아 수수료의 징수 근거도 없는 입법 불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는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으로서 이 중 민원서류 발급,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통일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커야할 요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불비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와 같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은수 의원, 곽정숙 의원, 이춘석

의원, 안효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조승수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곤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의원, 이인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대상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의원, 배은희 의원, 고승덕 의원, 임동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을 조건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시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한 민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김태원 의원, 이윤성 의원, 김세연 의원, 윤상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제출한 6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의원, 이명수 의원, 김정훈 의원, 박민식 의원, 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모범운전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이인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와 지형 변화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 31일 해산됨에 따라 동 국제화재단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 왔던 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이거나 장비·인력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선거당일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원양어업·외항여객운송사업·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선한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2013년도 재보궐선거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하여 여권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영사가 국내 법원이나 검사의 의뢰를 받아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범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영사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관에 출석한 재외선거사범 등을 국내에서 원격 조사하는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3:1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신설하여 총 3개의 지역선거구를 증설하였고,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를 분할하여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와, 곡성군은 순천시 선거구와, 구례군은 광양시 선거구와 각각 통합하도록 하고,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는 사천시 선거구와 통합하도록 하여 2개의 지역선거구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편차가 3:1을 넘지 않도록 경기도 이천시여주군 선거구 중 이천시를 단독 선거구로 하고, 여주군을 양평군가평군 선거구와 통합하도록 구역변경을 하며,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수원시 권선구·팔달구 선거구 등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246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54인으로 하고, 제19대 국회에 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하도록 하며,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감안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 및 준의결기관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당비 및 정치후원금의 영수증은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교부하도록 영수증교부 기한을 단축하였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 확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다소 불명확한 정치자금법의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평년의 2배만을 모금·기부하도록 명확하게 하였고, 정당 및 후원회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해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및 교섭단체의 행정보조요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박상천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복무 중에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선, 군의료체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에 "국가는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군 의료 예산은 연간 2200억 원

(2011년 전체국방예산 31조 4000억 원 중 0.7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도미비와 예산부족으로 군에서 의료사고가 빈발하여 최근 1년간 군의료사고 중 사망사고만 7건에 이릅니다.(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군 의료 사망사고)

현재 많은 병사들이 외아들임을 고려할 때 빈발하는 군의료사망사고는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을 파괴하는 사회문제이고 병사들의 인권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일선 장병들이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때 적시에 제대로 된 의료체계가 갖추어져야, 강군을 육성할 수 있고 부모들이 마음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작년 6월 군의료체계 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방부대 의료시설과 논산 육군훈련소 등을 현장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소위에서 심층검토한 군의료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법률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에 비해 보수 및 근무여건의 격차로 인해 임상경험이 많은 군의무관이 부족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심사를 거친 군의관의 경우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병역을 마친 의사가 군의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37세로 확대하는 한편, 군장학생 출신 의무부사관은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가산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접근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병사들이 질병이 있어도 꾀병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언을 당하여 자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요청을 거부·기피하는 상급자나 보건의료인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꾀병도 병이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상경험이 많은 군의무관 확보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오진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5건에 달합니다. 의과대학에의 위탁교육, 민간의료기관의 보수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규정, 군인사법 개정에 의한 장기복무군의무관의 정년연장 등입니다.

셋째, 군응급의료체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지연후송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군보건의료인은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없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하고, 매년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군 의료기관장은 의료법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 군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항은 단말기 자료에 수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여야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군부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방부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만든 것이고, 전문화된 군의료인력과 장비확충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입법화되면 군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 시흥을에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법문표현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 '여자', '남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표현은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에 비하여 사회적 존재보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거나 여성비하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법문표현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자', '여자'라는 표현을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 7월에 주택법을 개정하여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주택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준주택의 공급은 통계청의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정체 주택 수(1만 4677가구) 대비 약 3%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1~2인 가구의 수요를 기반으로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중도금대출 취급 및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개시하고 현재 주택자금대출잔액 약 17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민영화 예정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취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동 은행을 이용하는 서민에 대하여는 주택자금대출보증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하여 주택신용보증대출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법률안을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 등 공사의 업무취급 대상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이 포함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3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은 현행 규정과 같이 '준주택' 중 노인복지법상의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43조의11).

주택자금대출 취급 및 향후 민영화가 예정된 한국산업은행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이상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장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이성남 의원, 배영식 의원, 홍준표 의원, 박병석 의원, 이주영 의원, 김영환 의원,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7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카드수수료율 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영세가맹점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정

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수수료율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둘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 확대 위주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셋째,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사의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장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둘째,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를 위해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계를 통해 법인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장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동철 의원과 배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3건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둘째,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행정형벌의 합리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는 형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장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동철 의원, 권택기 의원, 이사철 의원(2건), 고승덕 의원, 김용태 의원(2건), 박선숙 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 적합성 검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법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된 사실 관계의 확정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심리종결일로 하였고,

넷째,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방해 행위 근절을 위하여 폭언·폭행, 현장진입 저지 등을 통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둥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하되,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무상할당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생산시설의 신설·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등으로 배출권 할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조정할 수 있고,

넷째,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 중 외국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이행기간 종료 시 배출권이 남을 경우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할당 대상업체가 할당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t당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2차 계획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되는 배출권 중 95% 이상은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매년 첫 임시회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법 등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려고 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9일 국회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입법예고의 방법 등은 국회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입법예고를 국회공보, 국회 홈페이지 또는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고,

둘째, 입법예고기간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 중 중요사항은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청원 출신 변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법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의 기준을 그레고리력으로 하고 있는데 윤년

을 포함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관한 정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그레고리력과 윤년의 정의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레고리력을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으로 표시하고,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하는 것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서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립유치원장의 임기는 타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달리 임기 무제한으로 인해 퇴임 시까지 그 지위와 신분이 보장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유치원장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아교육의 선진화 추진과 5세 누리과정 기반 확충을 위한 국·공립유치원장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장 임용 체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유치원의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장공모·평가제를 마련하여 유치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임용 기회를 확대하며, 유치원에도 원로교사제를 도입하여 원로교사의 풍부한 교직 경험을 활용한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장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및 고충심사 규정 등에 대해서 입법 미비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9년 5월 22일 본 의원 외 15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농어촌의 상당 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폐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 목적대로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폐교결정이 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폐교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은 지역학교의 폐교로 인한 상실감이 크며,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건물은 마을 환경미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폐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증진·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교된 학교의 설립 당시 지역주민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건물을 기부하여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공동으로 생활기반시설·편익시설·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의2 신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등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청원 출신 변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수준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지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국가 제도적 장치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 법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전인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 본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화성을 출신 박보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이에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등 학교폭력에 의한 폐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포함해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학부모 등의 동의절차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보건법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법사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이재오 의원, 안민석 의원, 전병헌 의원, 배은희 의원, 원유철 의원, 변재일 의원, 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10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가해학생의 경우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처벌을 의무화하여 가해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

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법사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원희목 의원, 안민석 의원, 윤상일 의원, 권영진 의원, 서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으로 확대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공모절차를 통해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강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법사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던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초·중등학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며,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도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김성동 의원입니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류 확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실시,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보급기관이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통합적·체계적인 한국어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내외에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대표 한국어 보급기관 '세종학당'을 안정적으로 확대 설립함과 동시에 정부 부처 간 한국어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국내외 세종학당 운영을 총괄 지원, 관리하는 중추 기구로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외 한국어 보급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어기본법상에 "세종학당", "세종교실" 및 "누리 세종학당"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종학당"의 설립과 지원, "세종교실" 지정 및 지원 등을 총괄 수행할 법인으로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고심 끝에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우리의 자랑스런 한국어가 세계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주당 전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전자파 민원이 2010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 국민들이 전기통신설비사용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전자파 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전자파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파로부터 인체 보호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제1항 중 제9호의2)

부디 본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 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 사행산업의 감시·단속 기능을 추가하고,

둘째, 사행산업의 범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현행법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중독예방치유사업에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전환하여 순 매출액의 0.5%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법정법인인 도박문제관리센터로 전환해 동 센터에서 부담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중독 예방·치유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경북 상주시 출신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 진흥, 관련 사업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경우 대부분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유치 및 개최될 국제경기대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동 법률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의 종류를 정하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동 법률안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헤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